



## 2020년도 춘계 학회상 후보자 공모

2020년도 춘계 정기총회시에 포상할 학회상(LG화학 고분자학술상, 한화고분자학술상, 중견학술상, 신진학술상, 기술상, TCI 우수 고분자연구상, 우수학위논문상)의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각각의 상에 대한 규정(<http://www.polymer.or.kr>)을 검토하시고, 응모회원에 적합한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학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서류접수

- 가) 마감일 : 2020년 3월 6일(금)
- 나) 접수처 : 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 
(우) 0624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, 혜천빌딩 601호(당일 도착분에 한함) (전화 : 02-568-3860)

### 2. 수상자 발표 및 시상 : 2020년 4월 9일(목)

### 3. 유의사항

- 가)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- 나) 심사방법은 해당 상의 규정과 해당 심사위원회 시행세칙을 따른다.
- 다) 적당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.

### LG화학 고분자학술상

한국고분자학회는 2013년부터 LG화학에서 기탁한 출연금으로 「LG화학 고분자학술상」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. 본 상은 고분자 합성,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발표하여 고분자 과학의 발전에 공헌을 한 중견회원에게 수여하며, 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. 회원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.

### 1. 수상 후보자의 자격

- 가)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회원으로 한다.
- 나) 국내에서 수행된 고분자 합성,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다)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공공대상의 상암고분자상, 삼성고분자학술상, 한화고분자학술상, 도레이고분자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
### 2. 구비서류

#### 가) 이력서

- 자유양식으로 하되,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

#### 나) 대표연구분야의 연구업적 대표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

- 대표논문 목록에는 각 논문의 인용횟수와 인용한 논문의 목록을 기재

#### 다) 대표논문 분야의 연구업적 요약서

- 1쪽 이내

#### 라) 총괄연구업적 목록

- 각 논문에 대해 대표저자/공동저자 여부, 년도, 논문제목, 권, 호, 페이지, SCI 여부, impact factor를 기재

- h-index

#### 마) 추천서 각 1부

-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

- 추천서에는 대표업적 분야에의 기여도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

## ※ LG화학 고분자학술상 규정※

- 제 1조 (명칭) 본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"LG화학 고분자학술상"으로 한다.
- 제 2조 (목적) 본 상은 고분자 합성,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수상자의 자격)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, 고분자 합성,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 4조 (심사내용) 고분자 합성,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 관련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,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.
- 제 5조 (추천) 학회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각 1부씩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모 제출한다.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.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,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 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 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.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LG화학 고분자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제 6조 (수상자의 선정)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LG화학 고분자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- 제 7조 (시상) 시상은 매년 춘계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1,000만 원을 수여한다. 단,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추계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.
- 제 8조 (수상자의 수)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.

## 한화고분자학술상

한국고분자학회는 2017년부터 한화토탈주식회사가 기탁한 출연금으로 「한화고분자학술상」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. 본 상은 고분자 과학의 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발표하여 고분자 과학의 발전에 공헌을 한 종결회원에게 수여하며, 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. 회원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.

## 1. 수상 후보자의 자격

- 가)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종결 회원으로 한다.
- 나)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)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공공대상의 상암고분자상, 삼성고분자학술상, 도레이고분자상,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
## 2. 구비서류

## 가) 이력서

- 자유양식으로 하되,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

## 나) 한 분야의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

- 대표논문 목록에는 각 논문의 인용횟수와 인용한 논문의 목록을 기재

## 다) 대표논문 분야의 업구업적 요약서

- 1쪽 이내

## 라) 총괄연구업적 목록

- 각 논문에 대해 대표저자/공동저자 여부, 년도, 논문제목, 권, 호, 페이지, SCI 여부, impact factor를 기재

- h-index

## 마) 추천서 각 1부

-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

- 추천서에는 대표업적 분야에의 기여도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

### ※ 한화고분자학술상 규정 ※

- 제 1조 (명칭)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“한화고분자학술상”이라 한다.
- 제 2조 (목적)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분야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피추천자격)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 4조 (심사내용)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.
- 제 5조 (추천)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1부씩 제출토록 한다. 주 추천 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.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, 심사 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.
- 제 6조 (시상) 시상은 상장과 부상 1,000만 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.
- 제 7조 (수상자 수)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중견학술상

한국고분자학회에서 2013년부터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「중견학술상」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. 본 상은 춘·추계 각 3명씩 시상하며 상금은 3백만 원입니다. 회원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.

#### 1. 수상 후보자의 자격

- 가)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현회원으로 한다.
- 나)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다)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대표연구자(주저자)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라)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
#### 2. 구비서류

- 가) 이력서
  - 자유양식으로 하되,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
- 나)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대표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
  - 대표논문목록에는 각 논문의 인용횟수와 인용한 논문의 목록을 기재
- 다) 대표논문의 연구업적 요약서
  - 1쪽이내
- 라) 총괄연구업적 목록
  - 각 논문에 대해 대표저자/공동저자 여부, 년도, 논문제목, 권, 호, 페이지, SCI 여부, impact factor를 기재
  - h-index
- 마) 추천서
  -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
  - 추천서에는 업적 분야에의 기여도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

## ※ 중견학술상 규정 ※

- 제 1조 (명칭)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“중견학술상”이라 칭한다.
- 제 2조 (목적)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에 공헌하고 고분자 분야의 연구 활동에 탁월한 실적을 쌓은 우수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피추천자격)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 4조 (심사내용)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. 단,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.
- 제 5조 (추천)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,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.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. 피추천자 중 당해 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,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.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제 6조 (시상) 시상은 상장과 부상 300만 원으로 한다.
- 제 7조 (수상자 수)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3명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신진학술상

한국고분자학회 2020년도 「신진학술상」의 후보자를 공모합니다. 「신진학술상」은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춘·추계 각 2명씩 시상하며, 상금은 2백만 원입니다.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.

## 1. 수상 후보자의 자격

- 가)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.
- 나)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다)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라)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
## 2. 구비서류

## 가) 이력서

- 자유양식으로 하되,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

## 나)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3편의 목록과 사본

- 목록에는 각 논문의 인용횟수와 각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목록을 기재

## 다) 연구업적 요약서

- 1쪽 이내

## 라) 총괄연구업적 목록

- 각 논문에 대해 대표저자/공동저자 여부, 연도, 논문제목, 권, 호, 페이지, SCI 여부, impact factor를 기재

- h-index

## 마) 추천서

-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

- 추천서에는 업적 분야에의 기여도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

## ※ 신진학술상 규정 ※

제 1조 (명칭)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“신진학술상”이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,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피추천자격)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5세 이하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 학위는 국내,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.

제 4조 (심사내용) 최종학위 후에 성취한 업적전체를 평가하나, 특정 연구분야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.

제 5조 (추천)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.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.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,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제 6조 (시상)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 원으로 한다.

제 7조 (수상자 수)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.

## 기술상

## ※ 기술상 규정 ※

제 1조 (명칭)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“기술상”이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,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성취한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피추천자격)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4조 (심사내용) 대상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.

제 5조 (추천)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부씩 제출한다.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.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,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제 6조 (시상) 시상은 상장과 부상 300만 원으로 한다.

제 7조 (수상자 수)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.

## TCI 우수고분자연구상

한국고분자학회는 2018년 추계부터 TCI(세진시아이)에서 기탁한 출연금으로 「TCI 우수고분자연구상」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. 본 상은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의 논문 제1저자 및 해당 연구실에게 수여하며, 상금은 3백만 원(제 1저자에게 1백만 원, 해당 연구실에 2백만 원)입니다.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기다립니다.

## 1. 수상 후보자의 자격

- 가) 본 학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.
- 나)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을 원칙으로 한다.

## 2. 구비서류

- 가) 제 1저자 및 교신저자의 이력서
  - 자유양식으로 하되,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
- 나)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(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까지 국내외 저널에 출판된 논문, 온라인 출판 제외)
  - 논문사본, 논문 요약서, 논문에 포함된 저자의 동의서

## ※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규정 ※

- 제 1조 (명칭)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“TCI 우수고분자연구상”으로 한다.
- 제 2조 (목적)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연구자 및 해당 연구실을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피추천자격)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논문 제1저자 및 해당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다.
- 제 4조 (심사내용) 춘계: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(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)을 평가한다. 추계: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(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)을 평가한다. 심사용 서류로 우수논문, 논문요약서, 논문에 포함된 저자의 동의서를 1부씩 제출한다.
- 제 5조 (수상자의 선정)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- 제 6조 (시상) 시상은 매년 춘·추계 정기총회에서 제1저자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100만 원, 해당 연구실에 상패와 200만 원을 수여한다.
- 제 7조 (수상자의 수)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칙 제6조(시상)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4조(심사내용)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.

## 우수학위논문상

## ※ 우수학위논문상 규정 ※

- 제 1조 (명칭)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“우수학위논문상”이라 한다.
- 제 2조 (목적)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,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피추천자격) 석사/박사 과정 중 고분자학회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이상(석사일 경우 1년이상, 박사일 경우 2년이상) 유지한 자로 시상일 이전 2년 내에 국내에서 석,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 받을 수 있다.
- 제 4조 (심사내용)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루어진 고분자관련 우수한 연구성과를 (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) 한다. 석사의 경우, 연구기간이 박사과정에 비하여 짧은 것을 고려하여 평가한다.
- 제 5조 (추천)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(학위논문 제외) 1부씩 제출한다.
- 제 6조 (시상) 시상은 상장과 부상(50만 원)으로 한다.
- 제 7조 (수상자 수) 수상자는 석사학위자, 박사학위자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.